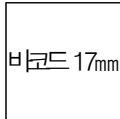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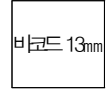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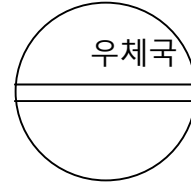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	문의처	
담당자			



우편반송용



음성변환용(외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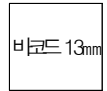
받는 사람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



음성변환용(내부)

세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관련법령
① 합 계				
② 가산된 세액				
③ 차감(공제·감면 등)된 세액				
납기 내 세액(① + ② - ③)				

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(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).

세목	구분	대상금액	세율	감면액	가산된 세액	관련법령
합 계						

시·군·구	(수납은행 확인용)
-------	------------
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번호

납기 내:	까지
-------	----
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부할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	수납용
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

시·군·구

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입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주 소

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
납부할 금액		

수납용
납기 내
까지

납기 후
까지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전자납부번호

-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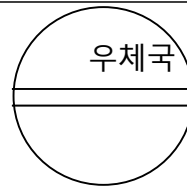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- 210mm×297mm(CP지 90g/m²)

자동납부에 대한 안내

1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,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(자동납부는 불가합니다)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2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제출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) 또는 심판청구(제출기관: 조세심판원장)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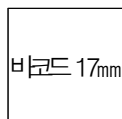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 13mm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

우편반송용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※ 계산식

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시·군·구 (수업은행)
확인용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------	----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-------	------

전자납부
번호

답기 내: ㄱ
지

세 목	납기 내 세액

합 계	
납기 후:	까지

납부할 금액	
수납은행용	지방자치

비코드 단체의 장 직인
수납용

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바코드 13mm
음성변환용(내부)

세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관련법령
① 합 계				
② 가산된 세액				
③ 차감(공제·감면 등)된 세액				
납기 내 세액(① + ② - ③)				

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(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).

세목	구분	대상금액	세율	감면액	가산된 세액	관련법령
합 계						

차감된 지방세환급금 총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세목	환급금 총당액	세목	환급금 총당액

시·군·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

남세자번호: 지 반 세

과세대상 시행세 수납용 바코드

납기 내 세액			수납용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납기 내

			까
			나기 후

남부할 금액			까-
--------	--	--	----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
하시기 바랍니다. 담당자: 문의처:

반환의 년 월 일 수납의 년 월 일 *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

직인 (인) 수납인 전자납부

시망사지 단체의 장   [인]  

-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[illegible][illegibl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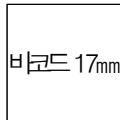
- ### 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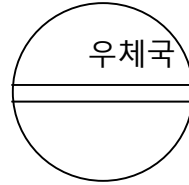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

음성반환용(외부)

받는 사람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

음성반환용(내부)

시·군·구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번호

납기 내: 까지
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 까지

납부할 금액

수납은행용 바코드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수납용

시·군·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주 소

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납부할 금액				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

수납용 바코드

수납용

납기 내: 까지

납기 후: 까지

납부할 금액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번호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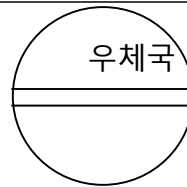
수납인

-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[illegible]

- 210mm×297mm(CP지 90g/m
- ²
-)

보내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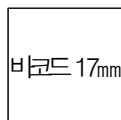


바코드 13mm
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

우편배송용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된다.

※ 계산식

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바탕 13mm

음상변환용(내부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8 시·군·구	수납은행 (확인용)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전자납부 번 호	
납기 내:	
지	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납기 후:	
납부할 금액	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 단체의 장
수납용	직인

 시·군·구	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									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 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
납 세 자 :
주 소 :
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수납용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납부할 금액				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*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담당자: 문의처:

지방자치단체의 장 **직인**

수납인

전자납부
번호

-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[illegible][illegible]

- 210mm×297mm(CP지 90g/m²)